

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

수 정 안

관련의안번호
제 115 호

제안일자 : 2016. 3. 21.

제 안 자 : 행정재경위원장

1. 수정이유

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문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수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가. “제26조”를 “제34조”로 수정함(안 제1조).
- 나. “ 「지역보건법」 제26조”를 “ 「지역보건법」 (이하”법“이라한다) 제34조”로 수정함(안 제3조).
- 다.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7호 서식까지는 중복으로 삭제하고, 별지 제8호 서식은 “서울시세무종합시스템”에서 과태료를 부과·징수·관리함으로 삭제함(안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8호 서식까지).
- 라. 과태료 부과기준의 위반사항을 수정함(안 별표).

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

수 정 안

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·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안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역보건법」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·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안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과태료 부과기준) 「지역보건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.

안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8호 서식까지 삭제한다.

안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(제3조 관련)의 위반사항 중 “법 제18조”를 “법 제23조”로 하고 “법 제21조”를 “법 제29조”로 하며, “법 제26조”를 “법 제34조”로 하고, “허위로”를 “거짓으로”하며, “건강진단”을 “건강검진”으로 하고, “보건지소라는 명칭을”를 “보건지소,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명칭을”로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1조(목적) <u>이 조례는 「지역보건법」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·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</u></p>	<p>제1조(목적) (현행과 같음)</p>	<p>제1조(목적) <u>이 조례는 「지역보건법」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·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</u></p>
<p>제3조(과태료 부과기준) 「지역보건법」 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6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.</p>	<p>제3조(과태료 부과기준) 「지역보건법」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	<p>제3조(과태료 부과기준) 「지역보건법」 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4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.</p>

신 · 구별표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[별표] 과태료 부과기준 (제3조 관련)</p> <p>1. 일반기준</p> <p>가. 위반행위가 2이상 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.</p> <p>나.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위반 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할 경우에 적용한다.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margin-top: 20px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위반사항</th> <th rowspan="2">근거법령</th> <th colspan="2">부과금액 (단위:만원)</th> </tr> <tr> <th>1차 위반</th> <th>2차 위반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, 예방접종, 순회진료 등을 행한 자</td> <td>법 제26조 제1항제1호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00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300</td> </tr> <tr> <td>법 제21조 규정에 위반하여 보건소, 보건의료원, 보건지소라는 명칭을 사용한자</td> <td>법 제26조 제1항제2호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00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300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위반사항	근거법령	부과금액 (단위:만원)		1차 위반	2차 위반	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, 예방접종, 순회진료 등을 행한 자	법 제26조 제1항제1호	100	300	법 제21조 규정에 위반하여 보건소, 보건의료원, 보건지소라는 명칭을 사용한자	법 제26조 제1항제2호	100	300		<p>[별표] 과태료 부과기준 (제3조 관련)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가. ~ 나. (현행과 같음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margin-top: 20px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위반사항</th> <th rowspan="2">근거법령</th> <th colspan="2">부과금액 (단위:만원)</th> </tr> <tr> <th>1차 위반</th> <th>2차 위반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, 예방접종, 순회진료 등을 행한자</td> <td>법 제34조 제1항제1호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00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300</td> </tr> <tr> <td>법 제29조 규정에 위반하여 보건소, 보건의료원, 보건지소,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한자</td> <td>법 제34조 제1항제2호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00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300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위반사항	근거법령	부과금액 (단위:만원)		1차 위반	2차 위반	법 제2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, 예방접종, 순회진료 등을 행한자	법 제34조 제1항제1호	100	300	법 제29조 규정에 위반하여 보건소, 보건의료원, 보건지소, 건강생활지원센터 라는 명칭을 사용한자	법 제34조 제1항제2호	100	300
위반사항			근거법령	부과금액 (단위:만원)																										
	1차 위반	2차 위반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, 예방접종, 순회진료 등을 행한 자	법 제26조 제1항제1호	100	300																											
법 제21조 규정에 위반하여 보건소, 보건의료원, 보건지소라는 명칭을 사용한자	법 제26조 제1항제2호	100	300																											
위반사항	근거법령	부과금액 (단위:만원)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1차 위반	2차 위반																											
법 제2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, 예방접종, 순회진료 등을 행한자	법 제34조 제1항제1호	100	300																											
법 제29조 규정에 위반하여 보건소, 보건의료원, 보건지소, 건강생활지원센터 라는 명칭을 사용한자	법 제34조 제1항제2호	100	300																											

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			
신청인	성명	주민등록번호	
	주소		
영업소	업소명(시설명)		
	소재지		
행정처분내역	처분관청	통지일자	
	처분내역	과태료금액	
	행정처분사유		
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 사유			
<p>지역보건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월 일</p> <p>위 신청인 (서명 또는 날인)</p> <p>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귀하</p>			

[별지 제7호서식]

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			
제 호			
수신	서울중앙지방법원장		발신
신	강남구청장 (인)		
제목 :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			
<p>1. 지역보건법 제26조제4항과 관련입니다. 2. 지역보건법 제 조 위반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정수조례 제3조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한바, 당사자로 부터 이의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			
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	성명	주민등록번호	
	주소(전화번호)		
과태료내역	고지일자	과태료금액	
	부과기간	이의제기일자	
<p>첨부 : 1. 과태료 처분 통지서 사본 1부. 2.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서 사본 1부. 3.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정수조례 사본 1부.</p>			

[별지 제8호서식]

과태료 부과정수대장

일련번호	통지서번호	과태료처분발령일자	납부기한		납부의무자		과태료납부일자	이의제기일자	이의제기통보일자
			당도	독도	성명	주거			

<삭 제>

<삭 제>

<삭 제>